



제 43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장애인올림픽 휘장 사용 및 공식후원사 우선공급권 부여>

■ 임오경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047호)

2026. 9.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일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장애인올림픽 휘장 사용 및 공식후원사 우선공급권 부여	3
※ 참고자료	9
1. 장애인올림픽 휘장 사용 승인 권한 관련 IPC 규정	9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임오경의원 등 11인
2. 발 의 일: 2026. 2. 25.
3. 회 부 일: 2026. 2. 2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올림픽 회장을 활용한 수익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특정 기업들을 ‘공식후원사’로 선정, 후원계약을 체결하며 ‘공식후원사’로 선정된 기업은 금전후원의 급부로 장애인올림픽 회장 등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부여받음.

그러나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 및 제8회 서울장애인올림픽대회 이후 올림픽과 장애인올림픽은 동년, 동소에서 개최가 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 장애인올림픽 회장을 사용한 수익사업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없고, 공식후원계약 체결 이후 장애인올림픽 등 대회 출전을 위하여 국가대표단에게 필요한 피복 등의 물품은 대한장애인체육회가 ‘공식후원사’와 별도의 구매계약을 통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공식후원사’에게 일반경쟁입찰이 아닌 개별적인 수의계약으로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자는 현장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또한, 대한장애인체육회는 기존에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 등을 통해 후원사들에게 우선공급권을 제공하였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 규

정이 없어 후원사들의 제도적 보호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장애인올림픽 회장을 사용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식후원계약 이후의 구매계약 체결 단계에서는 대한장애인체육회가 ‘공식후원사’에게 우선공급권을 제공함으로써 후원사의 유지 및 확대를 통한 스포츠마케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1조의2 신설 및 제55조제3항).

Ⅲ. 검토의견

1. 장애인올림픽 휘장 사용 및 공식후원사 우선공급권 부여

가. 개정안의 요지

개정안은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장애인올림픽 휘장 사용 승인에 관한 권한을 갖도록 하는 한편, 장애인올림픽 휘장사업의 공식후원사에게 대한장애인체육회 사업의 우선공급권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및 제55조제3항).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21조의2(장애인올림픽 휘장 사업) ① 장애인올림픽을 상징하는 문양과 그 문양을 포함하고 있는 모든 표지·도안·표어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이하 “상징물”이라 한다)을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제1항에 따른 사용 승인에 관한 권한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용 승인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내야 한다. ④ 대한장애인체육회는 국제경기대

	회 출전 준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사용 승인을 받은 자와 상징물을 활용한 물품 또는 용역을 구매하는 계약을 수익계약으로 할 수 있다.
제55조(과태료) ① · ② (생략)	제55조(과태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0조제3항, 제21조제1항, 제29조제1항,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21조제1항, 제21조의2제1항----- ----- -----.
④ · ⑤ (생략)	④ · ⑤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장애인올림픽(패럴림픽) 휘장 사용 승인 권한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지만¹⁾,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 규정²⁾에 따르면 국가별 패럴림픽위원회(NPC)가 장애인올림픽 휘장 사용 승인 권한을 갖고 있음.

대한장애인체육회는 IPC에 회원기구로 가입된 대한민국 패럴림픽위원회(NPC)로서 장애인올림픽 휘장 사용 승인 권한을 갖고 있고, 현재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특정 기업들을 ‘공식후원사’로 선정하여 후원계약을

1) 올림픽의 경우, 올림픽 휘장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대한올림픽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2009년부터 대한올림픽위원회와 통합된 대한체육회가 올림픽 휘장을 활용한 수익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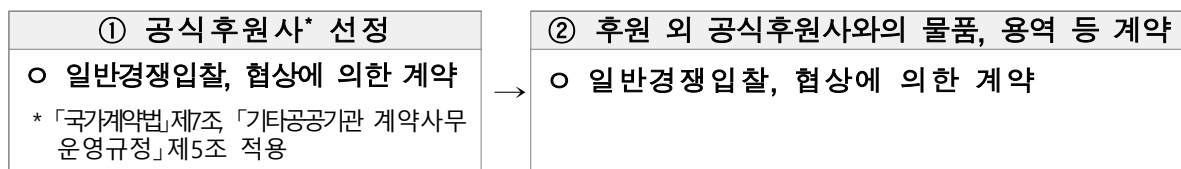
「국민체육진흥법」 제21조(올림픽 휘장 사업) ① 올림픽을 상징하는 오륜(五輪)과 오륜을 포함하고 있는 모든 표지·도안·표어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대한올림픽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참고자료] 장애인올림픽 휘장 사용 승인 권한 관련 IPC 규정

체결하고 있음. 선정된 공식후원사는 대한장애인체육회에 대한 현금, 물품 등 후원의 반대급부로 패럴림픽 등을 연계한 마케팅 권리, 휘장 사용 권리 등을 제공받음.

이후 올림픽 등 대회 출전을 위해 국가대표단에게 필요한 피복 등의 물품을 ‘공식후원사’로부터 조달하려는 경우에는 대한장애인체육회가 ‘공식후원사’와 별도의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한 구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장애인올림픽 휘장사업 계약 흐름]



개정안은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장애인올림픽 휘장 사용 승인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공식후원계약 이후의 구매계약 체결 단계에서 이미 선정된 ‘공식후원사’에게 우선공급권을 제공하여 후원사 모집 유인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보다 안정적인 후원사 모집을 통해 장애인 전문체육 진흥과 스포츠마케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① 올림픽과 장애인올림픽은 동일한 연도와 장소에서 개최됨에도 장애인올림픽 휘장 사용 승인 권한에 관한 규정이 부재하므로 근거를 법률에 마련할 필요가 있고, ② 미국, 일본,

영국 등 해외 사례를 감안할 때 공식후원사에 대한 우선공급권을 인정하여 후원모집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며, ③ 선수의 장애유형별 신체 특성 차이로 인해 시제품 제작 후 수차례 보완작업이 필수적이므로 장기 계약을 위한 우선공급권 입법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입장임.

다만, 수의계약의 조건과 범위, 기준 등을 하위 법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관련 문구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함께 제시하였음.

공정거래위원회는 물품 또는 용역을 구매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올림픽 상징물을 활용한 물품 또는 용역 구매 시 상징물 사용 승인을 받은 자와의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경우라면, 수의계약의 조건과 범위, 기준 등을 하위 규정에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한편, 현행법에 규정된 ‘장애인올림픽’이라는 명칭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패럴림픽’으로 정비하고, 대한체육회가 공식후원계약을 통해 올림픽 휘장 사용 승인을 받은 공식후원사에 대하여 우선공급권을 제공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제2217589호)이 본회의 의결 및 공포되었으므로³⁾, 이에 맞추어 개정안 문구를 일부 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3) 본회의 의결일: 2026. 5. 7., 공포일: 2026. 6. 2.

현 행	개 정 안	수정의견
<신 설>	제21조의2(<u>장애인올림픽</u> 회장 사업) ① <u>장애인 올림픽</u>을 상징하는 문양과 그 문양을 포함하고 있는 모든 표지·도안·표어 또는 이와 <u>비슷한 것(이하 “상징물”이라 한다)</u>을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u>대한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u> ② · ③ (생 략) ④ <u>대한장애인체육회는 국제경기대회 출전 준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사용 승인을 받은 자와 상징물을 활용한 물품 또는 용역을 구매하는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후단 신설></u>	제21조의2(<u>패럴림픽</u> 회장 사업) ① <u>패럴림픽</u>을 상징하는 문양과 그 문양을 포함하고 있는 모든 표지·도안·표어 또는 <u>이와 비슷한 것</u>을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u>대한장애인체육회의 승인</u>을 받아야 한다. ② · ③ (개정안과 같음) ④ <u>대한장애인체육회는 국제경기대회 출전 준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용 승인을 받은 자가 공급하는 지식재산권(상표권, 회장 사용에 관한 권리 등을 말한다)을 활용한 물품, 용역 등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의계약의 조건과 범위,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문 의 처
02)6788-5375

[참고자료] 장애인올림픽 휘장 사용 승인 권한 관련 IPC 규정

- ‘패럴림픽 자산’에 관한 모든 권리는 IPC에 귀속됨(IPC Intellectual Property Regulations 2.7)

2.7 All rights to any of the Paralympic Properties, including the right to use, transfer and license the use of the Paralympic Properties for any purpose, belong exclusively to the IPC.

- NPC는 IPC의 전반적인 감독 하에 패럴림픽 용어 및 패럴림픽 심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짐(IPC Intellectual Property Regulations 4.11)

4.11 Any use of the Paralympic Properties must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 Paralympic Movement and must not detract from its dignity or reputation. NPCs will have the right to use the Paralympic Terminology and Paralympic Symbol in accordance with these Regulations, which right is devolved from the IPC as the absolute owner of the rights and is therefore subject to the overall supervision of the IPC.

- 각 NPC는 자국 또는 관할지역 내에서 IPC 규정의 소유권 및 사용 요건이 준수되도록 보장할 책임이 있음(IPC Intellectual Property Regulations 3.3)

3.3 Each NPC is responsible for ensuring that the ownership and use requirements of these Regulations are observed in its country or territory. Each NPC must take steps to prohibit the use of any Paralympic Properties within its geographical jurisdiction that would be contrary to law, the requirements of these Regulations, the IPC Brandbook or any other provision of the IPC Handbook.